

## 계절학기 운영 규정

제정 1998. 06. 05.  
제11차 개정 2019. 06. 25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칙 제32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11조 제9항에 따라 계절학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8.10.29.)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“계절학기”라 함은 학칙상의 정규학기와는 별도로 규정된 학사과정 이수학점 중 일부를 취득케 할 목적으로 하계 및 동계 방학 중에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.

**제3조(교과목 개설 및 담당교원 배정)** ① 교과목 개설은 편성과목에 개설되어 있는 학사과정의 교과목 중에서 수강대상자의 폭이 넓고 설강 운영이 가능한 교과목과 개설 가능한 e-러닝 강좌로 하며, 개설 교과목은 전임 및 비전임교원(외래교수 제외)으로 배정한다. (개정 2005.11.7.)(개정 2018.10.29.)(제목개정 2018.10.29.)  
 ② 각 교과목별 최저 수강인원은 15명으로 한다. 단,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(개정 2000.6.2., 2005.11.7., 2016. 11. 14)  
 ③ 현장실습 최저 수강인원은 5명으로 한다. (신설 2005.1.24)

**제4조(수업기간)** 계절학기 수업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, 학점 당 수업 시간 수는 15시간(실험·실습과목은 30시간)으로 한다. 단, 학칙 제31조의4(현장실습)에 의한 현장 실습 과목은 학생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 (개정 2006.2.27., 2013.2.7., 2018.10.29)

**제5조(수업계획서 제출)** 계절학기 교과목 담당교수는 개설 1주전까지 계절학기 수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취득학점 제한)** ① 계절학기별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1학년과 2학년은 6학점, 3학년과 4학년은 10학점 이내로 제한하며, e-러닝강의(사이버토익 포함)로 수강 신청 할 수 있는 학점은 계절학기당 3학점이하로 한다. (개정 2005.11.7., 2006.2.27, 2011.1.11. 2015.06.05., 2018.10.29)  
 ② 삭제 (항 신설 2005.11.7) (개정 2006.2.27, 2011.1.11)

**제7조(수강자격)** 수강자격은 당해 학기 등록을 마치고 당해 학기 수강신청을 펼한 재학생으로 한다. (개정 2005.11.7.)

**제8조(수강신청)** ① 계절학기 수강을 희망하는 재학생은 지정된 기일내에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, **교육연구처장**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(개정 2002.2.6., 2019.06.25)

② 수강신청 마감 후 수강인원이 미달되어 폐강된 교과목에 대한 수강 신청은 취소된다. 다만, 폐강된 교과목은 지정된 기간에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신청 할 수 있다.

**제9조(시험)** 계절학기의 시험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10조(성적)** ① 교과목당 수업시간수의 4분의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. (개정 2002.2.6)  
 ②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과 성적은 졸업소요학점과 졸업시 전체 평균평점에만 합

산시키며, 정규학기의 평균성적 산출 및 장학생선발 및 학사경고 성적과는 관계하지 아니한다. (개정 2000.6.2)

**제11조(등록)** ① 학생은 계절학기 등록 시에는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수강 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반환한다. (개정 2018.10.29.)

1. 당해학기 개시일 전 : 수업료 전액 (신설 2018.10.29.)
  2. 수업일수의 1/3 경과 전 : 수업료의 6분의 5 (신설 2018.10.29.)
  3. 수업일수의 1/2 경과 전 : 수업료의 3분의 2 (신설 2018.10.29.)
  4. 수업일수의 2/3 경과 전 : 수업료의 2분의 1 (신설 2018.10.29.)
  5. 수업일수의 2/3 경과 후 : 반환하지 않음. (신설 2018.10.29.)
- ② 납입금액과 징수방법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12조(강사료 지급)** 계절학기 담당교수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되, 그 기준은 당해 학기마다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**부칙**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관계규정의 준용)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정규학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### **부칙**

이 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### **부칙**

이 규정은 2000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### **부칙**

이 규정은 200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### **부칙** (기획예산과-79 : 2005.1.24)

이 규정은 200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### **부칙** (기획예산과-1258, 2005.11.7)

이 규정은 2005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### **부칙** (기획예산과-213, 2006.2.27)

이 규정은 200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### **부칙** (기획예산부-30, 2011.1.12)

①(시행일) 변경 규정은 201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

②(경과조치) 제6조는 2015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하며 휴학 및 복학, 편입, 재입학 등의 학적변동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.

③ 기존 140학점제 적용대상자는 변경전 규정을 적용한다.

### **부칙** (기획예산부-90, 2013.2.7)

이 규정은 201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부-351, 2015.06.05)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06월 05일부터 시행한다
- ②(경과조치) 제6조 1항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부-803, 2016.11.11)

이 규정은 2016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547, 2018.10.29)

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[기획예산팀-330](#), 2019.06.25)

이 규정은 [2019년 06월 25일](#)부터 시행한다.